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67
------	------

제출일자 : 2024. 8. 22.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2) 입법예고(2024. 7. 30. ~ 2024. 8. 19.) 결과: 별도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1. 제안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023. 11. 22. 공포 및 2024. 11. 23. 시행)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제6호의2)

나.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3조제1항 삭제)

다. 건강진단결과서 등 발급 수수료를 3,000원으로 명시(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를 “진료 시”로, “따른 진료수가 기준”을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의2 중 “「국민건강 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의 금액란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 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을 “3,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 <u>국민건강보험법</u> 」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u>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u>
	② (생략)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 ① 「 <u>의료급여법 시행령</u> 」 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게는 제2조제2항 <u>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략)
	6의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u>국민건강보험법</u> 」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만 해당한다.) ,
	7. ~ 9. (생략)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 관련)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또는 건강진단서	다. 식품위생 분야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다' 항목에 '마' 항목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 관련)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또는 건강진단서	다. 식품위생 분야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1통	3,000원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다' 항목에 '마' 항목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단순히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미발생.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연 락 처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 2023. 7. 2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49호, 2023. 7.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한 사람, 검사를 의뢰한 사람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9.27, 2011.5.13., 2016.5.10.>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0.11.24., 2011.5.13., 2016.5.10.>
-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2000.11.24., 2005.12.28.>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출명
 2. 삭제<2023.7.20.>
 3. 유료접종
 4. 검사
 5. 삭제<2011.05.13>
 6. 의과 진료비
 7. 삭제<2006.12.29>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

-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게는 제2조제2항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1997.9.27., 2005.12.28., 2011.5.13., 2016.5.1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5.13., 2006.12.29., 2011.5.13., 2016.5.10., 2019.7.19., 2020.9.18., 2023.7.20.>
 1. 감염병 등 응급환자의 이송 및 1차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저소득층 주민, 노인정 등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이체민 집단보호소 등 일시 자활할 수 없는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금천구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등 각종 공적행사 시 의료지원
 - 6의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만 해당한다.)
 7.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와 골밀도검사의 수수료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분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 ③ 삭제<2016.5.10.>

제4조 삭제<2023.7.20.>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0.]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 11. 23.] [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타법개정]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